

## [추가모집] 『2026년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하여 『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2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중견기업, 대기업 & 공공기관 지원 가능(단, 글로벌기업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3

## 사업내용

-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 ④ 중소기업·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변경, 할당 신청·조정·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기법

\*\* 지원가능 설비: [별첨1] 지원가능 대상설비 참고

※ ①, ④항목은 사전 수요조사 시 수요 없음에 따라 예산 편성 無

### 4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 5

## 사업예산

- 지원규모: 총 45,400천원

\* 기업별 차등 지원: 중소기업(70%)·중견(50%)·대기업(30%) 이내

- 정부지원금: 잔여 예산 범위(45,400천원) 내에서 지원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컨설팅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중소기업·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 성과검증비용계산 필요(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해당)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및 설치공사비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6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4. 13.(월) ~ 24.(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이메일([youngmipark@koat.or.kr](mailto:youngmipark@koat.or.kr))로 추가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구축)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 [첨부1] ①신청서, ②수행계획서, ③서약서, ④기업규모 확인서, ⑤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첨부2] ①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Tool(엑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발급

## 7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내용 및 적정성 등	PT

\* 지원 할당대상업체 선정의 객관성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방법 및 기준([별첨2]. 평가표 참고)

- 평가방법: 사업타당성 평가 후 사업대상 할당대상업체 선정
- \* 사업타당성: 신청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선정
- \* 계획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배점한도(100점)의 60점 이상인 자
-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추가공고 시 대기업·공공기관 지원 가능
-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8

## 추진일정

○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참조

일 정	절 차	담 당	비 고
3월	설명회·공고·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사업자 대상 설명회</li> <li>지원사업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li> </ul>
3월 중순	지원사업자 선정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할당업체 선정</li> </ul>
3월 말	협약체결	진흥원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흥원-할당업체 협약체결</li> <li>관련서류 제출</li> </ul>
4월 초	착수보고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보고회 개최(착수보고서 제출 및 모니터링 측정 방안 협의)</li> </ul>
4월 중순	선금급 지급	진흥원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사업자가 선금급 신청 시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의 50% 지급</li> </ul>
5~8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사업자 사업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모니터링 장치 포함)</li> </ul>
9월 초	중간평가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완료 확인</li> </ul>
9~11월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지원사업자 검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축된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확보 (최소 60일 이상) 및 성과검증</li> </ul>
12월 초	최종평가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링 성과검증 결과 평가</li> </ul>
12월 중순	사업비(잔금) 지급	진흥원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지급요청(정산보고서 포함)</li> </ul>
12월 말	외부 회계 검증	회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흥원이 지정한 외부 회계 검증 기관에서 실시</li> </ul>
12월 말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결과보고서 및 외부 회계 검증 결과보고서 제출</li> </ul>
12월 말	이자반납	지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검증 결과 잔액(이자) 있을시 e나라도움에 반납</li> <li>이자 반납 확인 후 진흥원 사업완료 통보</li> </ul>

\* 상기 일정은 표준(안)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함

**9****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 수행계획서는 목차 및 작성 지침의 순서에 의해 작성
-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필요시 신청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 그리고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수행계획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수행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수행계획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10****준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이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지원사업자의 부담함
- 계획서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또는 진흥원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획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함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이번 지원사업이 관련하여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별첨3] 지원업체 계약 기준 참고)

## 11 |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및 『협약서』에 따름
-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며, 향후 진흥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지원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 계약 체결이 불가함
- 계약별 견적은 비교 견적 포함 총 3종을 제출하되, 비교 견적을 제출하지 못할 때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필요
  - \* 부득이한 경우 단독 혹은 양자 입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특허증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격 등 설비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12 | 문의처

- 사업문의처: 063-919-1583, 158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 사업 신청: 1670-9595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수요기관등록 및 계약체결: 1588-0800 (나라장터 콜센터)

## [별첨 1]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설비

번호	감축설비명	지원범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및 냉열(외기열 포함)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 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등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4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인증제품에 한함
5	고효율 인증기자재	LED관련 기자재, 펌프,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블로어, 가스히트펌프 등 ※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물(옥상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 바이오매스는 인증받은 WCF, 펠릿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 설비만 해당 ※ 자체소비용 설비만 지원
7	연료전환	기존 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설비 ※ 대기환경보전법(청정연료 사용 기준)에 의한 연료전환은 지원 제외
8	기타	상기 대상설비 이외에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타당한 설비 ※ 이 경우,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수행

※ 모든 대상 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이 불가하며,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 신재생에너지활용설비(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별첨 2] 평가표

###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점기준					배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사업 계획 (35점)	① 사업 추진 전략 합리성(15) - 목적, 도입설비의 적절성	15	12	9	6	3	15		
	② 사업 추진체계 및 계획의 구체성(10)	10	8	6	4	2	10		
	③ 설비업체 선정의 적절성(10) - 설비의 특성,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10	8	6	4	2	10		
사업 관리 (25점)	① 추진 일정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5)	5	4	3	2	1	5		
	② 감축 효과 모니터링 및 관리(5)	5	4	3	2	1	5		
	③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15) - 구성 및 비용의 적정성	15	12	9	6	3	15		
사업 효과 (40점)	① 온실가스 감축 효과 = 감축량(tCO <sub>2</sub> e/yr) ÷ 사업비(억원)	산출타당성 감축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약간 낮음	낮음	30	
		200 이상	30	27	24	21	18		
		150 이상	28	25	22	19	16		
		100 이상	26	23	20	17	14		
		50 이상	24	21	18	15	12		
		50 미만	22	19	16	13	11		
	② 에너지 절감효과 = 절감량(TJ/년) ÷ 사업비(억원)	절감량	2 이상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0.5 미만	10	계량
점수		10	9	8	7	6			
합 계							100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지원사업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점기준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사업추진 전략 (15점)	① EnMS 도입목적 및 필요성(5) ② 사업 목표 명확성 및 결과 활용의 구체성(5) ③ 사업 추진체계, 조직 및 인력 타당성(5)	15	13	11	9	7	15	
사업내용 (30점)	① 에너지사용량 및 배출량 현황 파악 구체성(15)	15	13	11	9	7	15	
	② 계측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계획 적절성(10)	10	8	6	4	2	10	
	③ 추진체계 및 일정의 타당성(5)	5	4	3	2	1	5	
사업 효과 (20점)	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 타당성, 정확성 및 신뢰성	10	8	6	4	2	10	
	② 온실가스 감축률 효과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eq/yr)) - (사업 후 배출량(tCO <sub>2</sub> eq/yr))}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eq/yr)) × 100	감축률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10
		점수	10	8	6	4	2	
사업 관리 (25점)	①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 구성 및 비용의 적정성	10	8	6	4	2	10	
	② 사업수행자(컨설팅업체 및 계측인프라 및 시스템업체)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계량평가기준에 의거					5	
	③ 사업수행자 유사 실적						5	
	④ 사업수행자 신용평가 등급						5	
사후관리 (10점)	①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전략 및 계획	10	8	6	4	2	10	
<b>합 계</b>							<b>100</b>	

### [별첨 3] 지원사업자 계약 기준

-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준수하여 계약체결
  - 계약체결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 계약체결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방법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체결 방식: 지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방식으로 체결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최소 2개 이상 업체 견적 첨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체결